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우리 프랭클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2. 효력발생일 : 2023.10.27
3. 정정사유
 - 클래스 신설
 -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<집합투자규약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클래스 신설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~9. <생략> 10. CLASS P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<추가> 11. <생략> <신설>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~9. <좌동> 10. CLASS P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 11. <좌동> 12. CLASS P-e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 13. CLASS S-P1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
클래스 신설	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<생략>	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<좌동>

	1~11. <생략> <신설>	1~11. <좌동> 12. CLASS P-e 수익증권 13. CLASS S-P1 수익증권
클래스 신설	제39조(보수) ③ <생략> 1~11. <생략> <신설>	제39조(보수) ③ <좌동> 1~11. <좌동> 12. CLASS P-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42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 % 13. CLASS S-P1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21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 %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	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클래스 신설	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신설>	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Class P-e: E7255 / ClassS-P1: E7257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-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클래스 신설	제2부. 11. 가. (2) 종류별 가입자격, 13.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P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<추가>	제2부. 11. 가. (2) 종류별 가입자격, 13.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P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

	<신설>	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P-e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1)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p>
클래스 신설	제2부. 13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(연간, %) <신설>	제2부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(연간, %) <표1>

<간이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<표1>

구분	지급비율(순자산총액의 %, 연)									
	집합투자 업자보수	판매회사 보수	신탁업자 보수	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	총보수	기타 비용	총보수 · 비용	(동종유형 총보수)	합성 총보수·비용 (모투자신탁 총보수비용 포함)	증권 거래 비용
P-e 수수료미징구- 온라인- 퇴직연금	0.1000	0.4200	0.0300	0.0100	0.5600	-	0.5600	-	1.5238	-
S-P1 수수료미징구- 온라인슈퍼- 퇴직연금	0.1000	0.2100	0.0300	0.0100	0.3500	-	0.3500	-	1.3138	-

지급시기	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	사유 발생시	-	-	-	사유 발생시
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	---	---	---	--------

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·비용

구분		투자기간				
		1 년후	2 년후	3 년후	5 년후	10 년후
수수료미징구- 온라인- 퇴직연금(P-e)	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	57	117	179	313	701
	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)	155	316	482	831	1,815
수수료미징구- 온라인슈퍼- 퇴직연금(S-P1)	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	36	73	113	197	443
	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)	134	273	416	720	1,582